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

-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16.1.12.개정, ' 16.8.1.시행 법률 관련 -

1)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기존 인정기준 유지)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 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가 개정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적용대상 :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① 2017.1.1.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② 2018.1.1. 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상 교과목 : 아동복지(론),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

2016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한 사람, 또는 2017년에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동복지(론)” 대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3)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의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

- 적용대상 :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① 2014.1.~2016.12. 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구분	인정기준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영아발달”, “유아발달”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보육필수’,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사례1]

2015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하여

“영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 2017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 이수 시 보육필수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2]

2016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입학자가

보육필수 영역에서 “아동복지(론)(3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보육교사론(3학점)”

교과목을 이수하고 휴학, 2018년에 복학하여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유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1과목(3학점)”를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할 경우 인정

4) 개정기준(2016.8.1. 시행) 대상자의 「영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방법

- 적용대상 :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① 2017.1.1.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②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인정기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p>영아발달 + 유아발달 이수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p> <p>※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로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 실무’ 각 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p>

[사례1]

2017.3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경우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2]

2018.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6년에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완료 한 경우 →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5) 개정기준(2016.8.1. 시행) 대상자가 종전기준(2014.3.1. 시행)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적용대상 :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①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영유아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

2018.1.1.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아동문학교육” 대신 “아동문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아동문학교육”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